

『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』 안내문

1. 세이브더칠드런 소개

- ▣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, 보호,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, 종교,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.
- ▣ 사업소개

구분	사업내용	
권리 옹호	아동권리옹호활동	차별반대 캠페인, 폭력과 학대 방지 옹호활동, 아동 삶의 질 연구
	아동권리거버넌스	아동권리모니터링, 아동권리와 경영원칙, 시민참여활동
	국제개발협력 정책	글로벌 캠페인 활동,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선 활동
국내	보호	농어촌아동지원, 저소득가정아동아동지원, 결연사업, 난민아동지원, 아동학대에방 치료, 가정위탁지원, 지역 내 아동보호
	교육	보육·유치원교사 아동권리교육, 다문화인식개선, 이중언어지원, 영유아보육
	보건의료	검사 및 외래비 지원, 심리정서장애아동 치료지원
해외	보건, 교육, 아동보호, 생계지원, 해외결연, 인도적지원(긴급구호)	

2. 『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』 소개

- ▣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이란?

세이브더칠드런의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
- ▣ 사업내용 및 선정과정

영역	지원항목	세부내용	단일항목 지원금액	사례선정과정 및 추진절차
생계	생계비 (A)	식료품, 방한복 구입, 생필품 구입비, 동절기 난방비, 단전·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비용	최대 200만원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<사례관리기관></p> <p>사례발굴</p> <p>사례추천,접수</p> <p>지원확정 대상 추가서류 제출</p> <p>후원금 사용 및 사례관리</p> <p>경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<지부></p> <p>사업공지 및 사례추천 요청</p> <p>사례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</p> <p>후원금 지급</p> </div> </div>
	교육비 (B)	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,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, 초중고 급식비, 교복비, 기타 교육 및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	최대 200만원	
주거	주거환경 개선비 (C)	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비용(누수차단, 노후주택정비, 벽지 및 장판 교체, 욕실 및 화장실 설치 등),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, 재해지역 주거복구 등	최대 300만원	
	임시주거비 (D)	강제퇴거,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, 여관, 무보증 월세 등 지원	최대 300만원	
의료	의료비 (E)	병원검사 및 치료,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/정신적 치료비용 지원	최대 300만원	
	심리치료비 (F)	심리검사, 심리상담, 정신과 진료(외래비, 약제비 포함), 심리치료(놀이·미술·집단치료 등) 지원. 대상자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경우,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(보호자만 지원 불가)	최대 200만원	
기타	일반 사례관리비	아동 사례관리 시 필요한 소액비용 지원(교통비, 목욕비, 안경구입비, 교재구입비 등)	최대 30만원	

*중복항목 지원금액 : (A),(B),(F)통합신청 시 최대 300만원 / (A),(B),(C),(D),(E),(F)통합신청 시 최대 500만원 지원

- ▣ 사업대상 :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일반저소득 가정 아동(중위소득 기준표 :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홈페이지(<http://nbchild.sc.or.kr>) 게시판→자료실 『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양식 및 소득 기준표』 참조)

- ▣ 신청접수 방법 : 홈페이지 게시판→자료실에서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양식 다운로드 후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신청서, 등본, 소득증명서, 참여동의서(기관,아동)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스캔 후 담당자 메일(nbchild@sc.or.kr)공문접수

* 소득증명서 : 수급자·수급자증명서, 차상위·차상위증명서류, 일반저소득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등본상 성인가족 모두포함)

- ▣ 문의 : 남부지역본부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담당자 (☎051-758-7732)